

# 2024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

## 1. 건설업 외국인력(E-9) 쿼터 확대 및 숙련기능인력(E-7-4) 접수

- 건설업 외국인력(E-9) 쿼터 역대 최대규모 편성
  - 건설분야 총 6,000명 및 2만명 탄력배정 운용\*
  - \* ('23년) 3,619명+탄력배정 1만500명→('24년) 6,000명+탄력배정 2만명
-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(E-7-4)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접수
  - 신청기간 : 쿼터(건설업 300명)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
  - 신청방법 :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(tongnamu78@korea.kr)
  - 고용기업 요건
    - ① 비전문취업(E-9) 또는 방문취업(H-2) 등 외국인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
    - ② 국세,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
  -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
    - ①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(E-9), 방문취업(H-2)으로 4년 이상 체류
    -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,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(E-7-4) 고용계약
    -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
    - ④ 숙련기능인력(E-7-4)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최소 200점 이상(연평균 소득 2,500만원 이상, 한국어능력 TOPIK 2급 이상 등)
  -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: 「건설기술진흥법」상 신기술 지정 우수건설 사업자, 「건설산업기본법」상 고용평가 우수 사업자, 외국인 합법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업자 등
- ☞ 국토부를 통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(E-7-4)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자격 전환이 용이\*
- \* 전환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2년간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고용기업 추천을 받는 자격요건 미적용

---

## 2.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

---

-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및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퇴직공제 의무가입 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
  - 대상공사 : (기존) 공공 50억 이상, 민간 100억 이상→(확대) 공공 1억 이상, 민간 50억 이상
  - 주요내용
    - (사업주) 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·운영 의무(원수급인)
      - ※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경우\*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앱 활용하여 신고 가능
      - \* 공사에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- ② 전자카드 발급\* 의무(원수급인, 인정승인시 하수급인)
      - \* 미발급시 과태료(1차 1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300만원)
  - (근로자)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에 출·퇴근 내역 기록
  - (발주자) 공사원가 중 "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"에서 전자카드 운영 금액 정산
- 대상공사 : '24. 1. 1 이후 입찰공고 건설공사부터 적용
  - ※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

---

## 3. 기타사항

---

- 건설업 월평균임금 인상 : ('23년도) 4,647,165원→('24년도) 4,786,620원
  - ※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 고시
-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인상 : ('23년도) 1,207,000원→('24년도) 1,237,000원
  - ※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액 고시
- 산재보험료율 인하 : ('23년도) 3.7%→('24년도) 3.56%(출퇴근 재해 0.06% 포함)
-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: ('23년도) 12.81%→('24년도) 12.95%(건강보험료 기준)
  - ※ 건강보험료율은 동결('24년 7.09%, 사용자, 근로자 절반씩 3.545% 부담)
- 최저임금 인상 : ('23년) 9,620원→('24년) 9,860원(월 환산액 2,060,740원)